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635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2019. 7. 22.

개정 2021. 2. 25.

학칙개정 2021. 10. 1.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제8조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106조에 따라 강사의 자격과 임용,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학칙개정 2021. 10. 1.)
- 제2조(강사의 임무) ① 강사는 담당 교과목을 교육·지도하는 강의 전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강사는 학기당 6시간 이내의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교과목 등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기당 9시간까지 강의를 담당할 수 있다.
- 제3조(자격) ① 강사는 「고등교육법」 제16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조 및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21. 2. 25.)
 - ② 강사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경력인정의 범위와 환산율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인사 규정」「별표 1]에 따른다.
 - ③ 강사는 박사학위 소지자를 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학문분 야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제4조(결격사유) ①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및 제69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로 임용될 수 없다.
 - ② 재직 중인 강사가 제1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 면직된다.
- 제5조(강사의 소속 등) ① 강사는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시설 등에 소속될 수 있다.
 - 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강사를 소속 부서 이외에 다른 부서에 겸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제6조(임용원칙) ① 총장은 강의 및 학생지도 능력이 우수하고 교원으로서 품위를 갖춘

사람을 강사로 신규 임용할 수 있다.

- ② 강사의 임용은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할 수 있다.
- ③ 강사의 신규 임용은 제3조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개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채용 등 임용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21. 2. 25.)
- 1.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 2. 학기 개시일 전 30일 이후 임용예정자가 임용을 포기한 경우로서 차순위 합격후보자를 임용할 수 없고, 기 임용 강사에게 강의를 배정할 수 없는 경우
- ④ 강사를 임용할 때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기간, 강사료, 방학 중 강의 준비금(개강 전 강의계획, 종강 후 성적평가 등에 소요되는 근무기간 강사료), 강의시간 및 복무 등 근무조건, 면직사유, 재임용 절차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
- **제7조(임용기간)** ①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운영상 필요한 경우 1년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기 중에 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강사의 임용이 필요한 경우 1년 미만의 잔여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다.
 - 1.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
 - 2. 6개월 이하 연구년
 - 3. 교원의 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대하여 긴급하게 대체할 강사가 필요한 경우
- **제8조(당연퇴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21, 2, 25.)
 - 1. 국가공무원법 제69조제1호에 해당되는 경우
 - 2. 재임용이 거부된 경우 또는 재임용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 3. 제7조제2항에 따라 임용된 후 해당 임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신규임용을 포함하여 총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때
 - 4. 임용계약에 따라 연구년제, 보직, 전임교원 신규채용, 수능출제 등으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또는 담당할 교과목을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후임용계약이 만료된 때
 - 5. 임용기간 중 65세에 도달하는 때(이 경우 65세에 달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 만료일로 본다.)

- 제9조(심사위원회) ① 강사를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각 부서(학과,학부, 전공, 프로그램, 단과대학, 대학원, 부속시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강사운영부서"라 한다.)에 강사의 신규채용·재임용 등에 대한 심사와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 ② 각 부서에 설치하는 심사위원회는 강사운영부서의 장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학장(대학원장)이 대학(대학원)에 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소속 부서 강사에 대한 신규임용, 재임용에 관한 심의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강사운영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 다만, 기초교육학부 등 강사운 영부서 특성에 따라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 소속 부서 전임교원으로 3명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임용분야 전문가 또는 관련 계열 전문가로 타 학과·전공·프로그램 소속 전임교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타학과·전공·프로그램 소속 전임교원 중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계열전문가가 없을 경우 외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 ⑤ 심사위원회 위원이 지원자와 관계가 친족(배우자, 혈족 8촌, 인척 4촌)에 해당되는 경우 위촉될 수 없으며 심사 당시 동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또한 지원자가 특정 위원을 기피 신청하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에 대한 수용여부를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⑥ 심사위원회 위원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⑦ 심사위원회를 학과(전공) 단위로 설치하여 운영한 경우 대학 차원의 사후 점검을 거치도록 한다.
- 제10조(대학인사위원회) 제9조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제5조에서 정한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 및 재임용을 확정한다.
- 제11조(신규임용절차) ① 강사를 신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용에 필요한 사항을 최소 5일 이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 ② 강사의 신규채용은 서류심사(기초 및 전공)와 면접심사 등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각 단계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1. 기초심사 : 지원자의 전공분야와 채용분야와의 전공일치도, 채용분야 적합성, 교원으로서의 자질 등 심사
 - 2. 전공심사 : 지원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교육능력 등의 심사
 - 3. 면접심사 : 채용후보자에 대한 교육능력, 교육자적 자질 및 인성, 발표 능력 등의 종

합적 심사

- ③ 제2항의 신규채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2조(재임용) ① 강사의 임용은 신규임용 및 재임용 2회까지 총 3년간 재임용 절차를 보장한다. 3년의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8조제3호에 따라 당연퇴직으로 본다.
 - ② 총장은 제1항에 따라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강사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만료일 2.5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을 신청할 수 있음을 대학장·대학원장·부서장과 강사운영부서장을 경유하여 해당 강사에게 통지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강사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재임용 심사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강사운영부서장에게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5.)
 - ④ 강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접수한 강사운영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 "강사 재임용 심사 평정표"에 따라 해당 강사의 강의평가, 학생지도 실적,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해당 강사에 대한 재임용 의견서를 첨부하여 재임용 예정 강사를 소속 대학장·대학원장을 경유하여 대학인사위원회에 제출한다.
 - ⑥ 재임용 평정 점수는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 및 최저점수 각 1개씩을 뺀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계산한다. 다만 심사위원 수가 4 명이하인 경우에는 심사위원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산술평균한다.
 - ⑦ 재임용 평정 점수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 ⑧ 강사운영부서장은 재임용 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에게 미충족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강사는 10일 이내에 소속 부서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⑨ 재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강사가 재임용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하고자 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해당 강사운영부서장은 위원회를 열 어 재심의를 하고 해당 강사가 기준 미충족 등 재임용 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추천된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임용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해당 강사에게 통지하고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거부와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한다.
 - ⑪ 대학인사위원회로부터 재임용거부를 통보받은 강사는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

- 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학인사위원회는 7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된 기일에 인사위원회에 출석 등에 의한 방법으로 의견 제출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 ① 재임용거부를 통보받았거나 재임용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강사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날에 당연면직된다.
-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재임용에 필요한 그 밖의 세부 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 **제13조(재임용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임용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2. 25.)
 - 1. 제12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강사운영부서 심사위원회에서 실시한 재임용 심사평 정점수가 70점 미만인 경우
 - 2. 대학인사위원회 재임용 심사에서 부적격으로 결정된 경우
 - 3.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의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강의평가 결과 강사 담당 교 과목의 환산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 4. 제8조(당연퇴직)에 해당하는 경우
 - 5.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된 경우
 - 6.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규정」제26조(폐강)에 따라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강된 경우로서 유사 강좌로 배치 전환이 불가한 경우
 - 7. 담당 교과목 강의를 위해 신임 교원을 채용한 경우
 - 8. 임용계약에 따라 연구년제, 보직, 신규채용 예정, 수능출제 등으로 전임교원이 담당하는 또는 담당할 교과목을 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채용된 후 임용계약이 만료된 경우
 - 9. 기타 계약으로 정한 면직 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14조(면직사유 등)** 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계약기간 중이라도 면직할 수 있다. (개정 2021. 2. 25.)
 - 1.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에 정한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
 -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경우
 - 3.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특정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경우
 - 4. (삭제 2021. 2. 25.)
 - 5. 교육과정 개편으로 해당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모두 폐지된 경우
 - 6. 소속 학과의 신입생이 없는 경우

- 7. 대학 구조개편으로 소속 학과(부서)가 폐지된 경우
- 8. 계약학과의 경우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만료 또는 폐과된 경우
- 9.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유발한 경우
- 10.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 11.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 12. 그 밖의 교원으로서 학생을 교육 · 지도하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 ② (삭제 2021. 2. 25.)
- 1. (삭제 2021. 2. 25.)
- 2. (삭제 2021. 2. 25.)
- 3. (삭제 2021. 2. 25.)
- 4. (삭제 2021. 2. 25.)
- 5. (삭제 2021. 2. 25.)
- 6. (삭제 2021. 2. 25.)
- 7. (삭제 2021. 2. 25.)
- 8. (삭제 2021. 2. 25.)
- ③ 제1항에 따라 면직하는 경우에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개정 2021. 2. 25.)
- 제15조(강의시간) ① 강사가 담당하는 강의시간은 학기별로 주당 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학기별로 주당 최대 9시간까지 담당할 수 있다.
 - ② 강사의 강의시간은 운영하는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강의시간을 일부만 인정할 수있다.
 - ③ 계절학기 강의를 위해 기존 강사가 담당할 수 있는 있는 경우에는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임용 중인 강사를 활용한다. 이 경우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시간 및 강사료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 제16조(강의제한 등)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강의평가운영지침에 따라 평가한 강의평가 결과 환산점수 80점미만을 받은 강사의 경우에는 해당 교과목이 개설되는 다음 학기 1개 학기 동안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강사가 담당하는 교과목이 연속하여 2회 이상 폐강된 경우 강사운영부서의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7조(근무조건 및 복무 등) ① 강사는 교육관계법령 및 서울과학기술대학교학칙 및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강사는 교육자로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강사는 교내외 활동에 있어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 ④ 강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이외의 기관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경우 소속 강사운 영부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강사는 재임용절차가 보장되는 기간 내에 본인의 사정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학기가 시작되기 2개월 전(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개월 전)까지 소속 강사운영부서장에게 서면으로 사직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 ⑥ 대학이 별도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과목의 강의를 배정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강사의 휴직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제18조(강사의 처우) ① 강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예우를 받는다.
 - ② 강사는 전체교수회의, 학부·학과, 위원회 등 모든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부서장 등 보직을 맡을 수 없다.
 - ③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규정」제3조 및 제11조에 따라 강사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 제19조(급여 등) ① 강사에게 담당 교과목에 대한 강사료는 「서울과학기술대교 전임교 원의 책임강의시간 및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른다.
 - ② 강사의 급여는 학기 단위로 산정하며 학기 중 강의에 대한 강사료와 방학 중 강의 준비금(개강 전 강의준비와 종강 후 성적처리 등을 위하여 업무처리에 소요된 소정의 금액)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임용계약서에 별도로 정한다.
 - ③ 계절학기 담당과목에 대한 강의료는 별도로 정한다.
 - ④ 강사에 대하여는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 인 경우에는 퇴직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 2. 25.)
 - ⑤ 강사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대상에서 제외한다.
 - ⑥ 강사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 제20조(징계 등) ① 강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규칙」, 「공무원 징계령」 등을 준용하여 운영한다.
 - ② 강사에 대한 직위해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을 준용한다.
 - ③ 강사에 대한 징계는 본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되 징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인사관리의 전자화) 강사의 인사기록물 및 문서는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고 인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

제22조(그 밖의 사항)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제 호)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은 2019. 8. 1. 이후 신규 임용된 강사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9. 8. 1. 이전에 임용된 시간강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되,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당연퇴직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제 591호, 2021. 2. 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제1항제3호 및 별지 제3호서식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규정 제 635호, 2021. 10.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사 임용 계약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이하 "임용권자"라 한다.)과 (이하 "임용예정자"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임용계약을 체결한다.

- 제1조(계약내용) "임용권자"와 "임용예정자"는 아래와 같이 강사 임용에 따른 임용 계약을 체결한다.
 - 1. 계약기간 : 20 . . . ~ 20 . . .
 - 2. 소속(강의 개설학과 / 부서) :
 - 3. 담당과목명 및 주당 강의시간

학년도 _학기				학년도 _학기				
교과목명	강의시간			교과목명	강의시간			비고
亚州三 0	이론	실습	계	<u> </u>	이론	실습	계	

- ※ 채용(소속)학과·부서 외의 학과·부서에서 강의를 하는 경우 본 계약에 포함하여 작성함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및「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관리규정」제26조에 따라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 ※ 채용 공고시 공고한 교과목명, 강의시간(요일, 교시)은 채용부서 사정에 따라 협의 조정될 수 있음.
- 제2조(강사료 등) 임용권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 및 강사료 지급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용예정자에게 강사료 등을 지급한다.
 - 1. 구성항목 : 학기 중 강의에 대한 강사료와 개강 전 강의준비와 종강 후 성적처리 등을 위한 방학 중 강의준비금(학기당 2주)
 - 2. 계산방법
 - 가. 강사료 : 강사료의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및 강사료 지급규정」에 따른다.
 - 나. 방학 중 강의준비금 : 학기당 해당 학기의 강의시수×2주를 계산하여 종강 익월 5일(공휴일인 경우 다음날)에 지급한다.
 - 3. 지급방법 : 매월 5일에(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제2조제2호에 의해 계산된 금 액을 임용예정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
 - ※ 단, 강의가 없는 학기의 경우 제2조(강사료 등)을 지급하지 아니함. 폐강에 의한 경우 에는 방학 중 강의준비금 1주 지급
- 제3조(복무 등 근무조건) ① "임용예정자"는 학기별로 주당 6시간 이하(계절학기 담당 과목에 대한 강의시간은 이 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함)의 교수시간을 담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당 최대 9시간 까지 담당할 수 있다.

- ② "임용예정자"에게는 4대 보험 중 건강보험을 제외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을 적용한다.
- ③ 강사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육공무원에 관한 제 규정(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조(면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당연퇴직) 및 제14조 (면직사유 등)에 따른다.
- 제5조(재임용 절차) "임용예정자"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 제6조(계약 해지 및 변경) "임용예정자"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임용 취소 또는 면직사유에 해당될 경우 "임용권자"는 "임용예정자" 와의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 제7조(그 밖의 사항) ① "임용예정자"는 계약기간 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으로서 신분상의 권리를 가지며, 맡은 바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공무원에 관한 모든 규정(「국가공무원법」,「교육공무원법」,「국가공무원복무규정」 등)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모든 규정(「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채용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며, "임용권자"와 "임용예정자"가 서명하고 각 1부씩 보관 한다.

- 붙임 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2.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채용 및 임용절차에 등에 관한 지침

. . .

(익용권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인〉

(임용예정자) 성명 〈인〉

주소

강사 재임용 심사 신청서

경사 제급증	治外 でる の
□ 인적 사항	
소속	성명
사 번 (또는 생년월일)	최초 임용일
□ 교육 실적	
평가 기간	담당 교과
<u>20</u> 년도학기	
<u>20</u> 년도학기	
재임용을 신청합니다.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 · · · · · · · · · · · · · · · · · ·	월 일
	신 청 인 (인)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강사 재임용 심사 평정표

	인적사항	평가기간	담당교과목		
소 속		학년도학기			
성 명		학년도학기			

시기치.ㅁ	לב ווני		rel 고기	평가대상		
심사항목	배점	평가항목	세부기준	배점	평점	기간
기본평가	P/F	강의평가점수	강의평가 평균 80점 이 상인 경우 강의평가 평균 80점 미 만인 경우	P F		전체
학사일정 40점		성적입력 기한 준수여부 (25점)	기한 준수 기한을 미준수한 강좌가 있는 경우	25 0		전체
준수	Д	결 · 보강 준수여부 (15점)	준수 1회 이상 미준수	15 0		전체
강의충실도	40점	강의개선보고서(CQI) 작성 (10점)	10× 수행교과목수 담당교과목수			최초 위촉학기
		LMS(e-Class 등) 사용 여부 (출석부) (10점)	10× <mark>수행강좌수</mark> 담당강좌수			전체
		강의계획서 입력기한 준수 여부 (20점)	20× 수행강좌수 담당강좌수			최종 위촉학기
근무자세	10점	법령 준수여부, 성실성, 책임성, 인격 및 품위, 인화, 협력관계 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0 8 5 3 0		전체
	10점	지정교육 이수 (폭력예방교육 등)	이수 미이수	10 0		전체
감점	-	평가기간 중 감봉 이상 평가기간 중 견책 처분 평가기간 중 경고 처분 평가기간 중 주의 처분		-35 -25 -10 -5		전체
		합 계				

* 평가대상 기간

• 전체 : 평가기간 전체(총 2개 학기)

· 최초 위촉학기 : 평가기간 중 첫 번째 학기

· 최종 위촉학기 : 평가기간 중 두 번째 학기

* 기본평가(강의평가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의평가 운영지침에 따라 매 학기 강의 평가 환산점수 적용,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담당 교과목 환산점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재임용에서 제외(불합격 처리)

다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의평가 운영지침 제2조제2항에 따라 평가대상에 제외된 강의 및 폐강 등의 사유로 강의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P"로 평가

- * **강의개선보고서(CQI) 작성** : 강사가 담당한 교과목 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동일 교과목은 1개 교과목으로 본다.(교과목코드가 동일하면 동일교과목으로 본다)
- * e-class 사용여부 및 강의계획서 입력기한 준수여부 : 강사가 평가대상 기간 담당 한 강좌 수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 * 폐강 등의 사유로 '학사일정 준수', '강의충실도'의 평가항목 중 심사가 불가한 항목에 대해서 **기본점수(배점×0.7)**를 부여한다.

※ 심사 방법

- ① 심사위원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여 심사, 최고점과 최저점 각 1개를 뺀 점수를 합산하고 산술평균,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② 기본평가 점수가 "P"이고, 심사위원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재임용 심사 대상자로 대학인사위원회에 추천
- ③ 근무자세가 미흡, 매우미흡일 경우 재임용 평가의견서 첨부

평가위원 소속 : 직급 :

성명: (서명)

강사 재임용 거부 사유서

심사대	상자	소속 및 성명 : 담당교과목 :								
〈재임용 거	부사유	>								
위와 같은 부합니다.	사유로	재임용심사위원회	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당해	강사의	재임용	을 :	거
()학	과 심사위원회 위원		_속 : 명 :		직급 (서명)				
				10.		(1.9)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인사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제0000-0000호

강의경력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

임용기간 :

경 력 사 항

강의	기간					총
부터	까지	담당학과 및 전공	직급	담당과목	주당시 수	강의 인정시 간

위의 경력사실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